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본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마련

-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증권업, 자산운용업, 선물업 등간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다단계의 장치를 마련하고,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이행상충을 스스로 관리토록 함.
 - 선행·과당 매매 등 이행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(Chinese-Wall) 설치를 의무화 함.
 - 정보교류 차단장치에는 사내, 사외, 은행·보험 특칙의 세 유형이 있으며, 사내는 한 회사내 업종간, 사외는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, 특칙은 은행·보험업과 집합 투자업 등 규제를 적용함.
-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정은 '08.7월 모두 제정되었고 재인가시 이행계획서를 받았으나,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.
 - 법령상 규정내용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실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침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한 시행령,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대한 운영방안은 2월중 개정 작업시 반영할 계획이며, 동 운영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'09.5.3일까지는 '자본시장 통합법 조기정착지원단'을 설치하여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자 함.

<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요>

사내	사외	은행·보험 특칙
- 정보교류 금지 *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(Wall-Cross) - 임원 및 직원의 겸직 금지 - 사무공간,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- 회의·통신 기록 유지	- 정보교류금지 *목적, 정보범위, 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보교류 허용 -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* 계열사 관계인 금융투자업자간에만 겸직 허용(상근/상근 제외) - 사무공간,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- 회의·통신 기록 유지	- 정보이용금지 - 임직원 겸직 및 파견 등의 제한 - 업무의 독립적 수행 등

(자본시장 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, 금융위 금융서비스국,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, 2/2)